

## 201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 2016년 3월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정기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2016년 3월 31일까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3. 4일 오픈)
  - 새로운 세정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사전적 신고지원’ 방식을 한층 발전시켜 유용한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더욱 확대 하였습니다.

### <주요 성실신고 지원 항목>

- 조사·사후검증 주요 적출사항 등 신고시 활용할 자료 제공
  - 지출증명서류 없는 원가계상액,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금액, 상품권 과다구입금액
  -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자 인건비 계상액,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내부거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료
  - 연구전담부서 취소, 정부출연금 받은 법인의 R&D 세액공제 검토할 자료 등
- 자기검증서식 추가 제공(신용카드·상품권 사적사용 등 4종→8종)

- 성실신고 지원 항목 이외에도 최근 법인세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등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상에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을 개발하여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입 납세자 정보조회]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http://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주요 정보>

- |                 |               |
|-----------------|---------------|
| ○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 ○ 법인세 신고 절차   |
| ○ 영리·비영리법인 신고안내 | ○ 법인세 공제·감면   |
| ○ 법인세 중간예납      | ○ 동업기업 과세특례   |
| ○ 연결납세제도        |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 자기검증용 검토서 제공 확대

-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서식을 자기검증용 검토서(8종)로 제공
  - \* ('15년, 4종) 지출증명서류, 중소기업 요건, R&D·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16년, 8종) '15년 제공 4종+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가지급금 인정이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 자기검증 서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체적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전자신고

#### □ 사전지원과 사후검증 연계 강화

- 사전 신고지원 항목 중 탈루나 오류가 빈번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고 반영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 예고한 사후검증 항목\*과 불성실 신고혐의 범인에 대해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정규증빙 미수취,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30개 항목

#### □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5.2(월), 중소기업 5.31(화)

- 참고로,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http://www.cardrotax.or.kr))를 통해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를 부담해야 합니다.

#### □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정기신고 및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고 범인은 신고내용 확인 후 환급금을 조기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126(국세청고객만족센터)으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1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예시

업종	항목	신고시 유의할 사항
전문건설 사업	1	개인 및 비영리법인 등 비사업자 매출액이 수입금액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
	2	재료비가 주요 원가를 차지함에도 재료비 대비 인건비가 과도한지 여부
	3	하도급업자와 사실과 다르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경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4	장기도급공사 수입금액을 올바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산정하였는지 여부
	5	노무비 단가조정, 중복지급, 인원집계 착오로 노무비를 잘못 계상하였는지 여부
	6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비용을 계상하였는지 여부
	7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 등으로 잘못 계상하여 접대비 시부인계산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
	8	도로공사시 흙파기에서 발생한 잔토매출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9	임원 또는 관계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변칙회계 처리하였는지 여부
	10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고액 인건비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변칙 회계처리 여부
	11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족 등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12	거래처 부담 하자보수비 비용 계상여부
	13	장비 임차료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1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연구개발전담 부서·인력 존재) 여부
	15	철구조물 공사 후 고철 등 부산물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

## 참고 2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화면

- 2016년 법인세 성실신고로 도와드리는 -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유의사항

1. 본 자료는 법인세 신고안내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법인세 신고용도 외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본 자료는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수정신고,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 신고 및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처 :

○○ 세무서 0000과 000 조사관 (☎02-1234-5678)

## I. 기본사항

법 인 명		대 표 자	
법인구분		사업연도	
법인종류		세 무 서	
업 태		종 목	

\* 전년도 신고자료 기준임. 올해 신고시 법인종류, 업태종목 등을 정확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 II. 연도별 신고상황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2014년	2013년	2012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접 대 비			
기 부 금			
공제감면세액			
총부담세액			
소득률	당해업체		
	업종평균		

\* 전년도 신고자료 기준으로 세무조사, 과세자료 등으로 수정신고, 고지받은 경우 등 개별 추가경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 Ⅲ. '16년 신고시 참고할 자료

#### 1.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과세	면세	과세	면세
2015.1기				
2015.2기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로 수정신고, 고지 등 변동자료는 미반영

#### 2. 매출 자료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간	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2015년				

\*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반드시 확인

#### 3. 국세체납자료

(단위 : 백만원)

기준일자	건 수	체납액	정리보류액

#### 4. 신용카드 사적사용 검토금액 (2015년 사용금액)

(단위 : 백만원)

합계	신변잡화& 가정용품 구입	업무무관 업소이용	개인적치료	공휴일사용

\* 신용카드 사적사용 내용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으로 분류된 자료로, 실제 법인의 지급용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5. 지출증빙 미수취 검토금액 (2015년 신고내용 분석)

(단위 : 백만원)

①수취대상금액	②증빙수취금액	③차이금액	증빙수취비율 (②/①)

\* 지출증빙 미수취 검토금액은 15년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지출증빙 수취내용을 분석한 자료이며, 증빙수취 제외대상, 증빙수취 시기 등으로 인해 다소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수취대상금액(법인세법 §116 ①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의 수취대상 계정과목의 합계액이며, 증빙수취금액은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명수취금액의 합계액 임

- 수취대상 계정과목 예시 : 당기매입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수주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소모품비, 통신비, 운반비, 보관료, 건물·시설관리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인쇄비, 외주용역비, 기타판관비, 당기재료매입액, 외주비,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운임, 수선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사용료, 포장비, 중장비유지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인쇄비, 보관료 등

#### IV.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업종코드	(123456)	제조 / 자동차
------	----------	----------

#### V.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

(단위 : 건, 백만원)

안내코드	안내사항	안내내용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경우 차기이후에는 감소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등을 받은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R&D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귀사가 2014년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등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 수령액 :

#### VI. 맞춤형 안내사항

계정과목명	유의할 사항
복리후생비	개인적 용도 지출 및 증빙없는 금액은 손비 부인
인건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손비 부인

\* 최근 5년간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일괄 분석한 법인별 세무진단 내용(계정과목별)을 제공하는 자료로 개별 법인의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